

[117] 정신신경용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<p>Sertraline HCl (품명 : 졸로푸트정 등),</p> <p>Paroxetine HCl (품명 : 세로자트정 등),</p> <p>Fluoxetine HCl (품명 : 푸로작캡셀 등),</p> <p>Mirtazapine (품명 : 레메론정 등),</p> <p>Citalopram HBr (품명 :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램),</p> <p>Escitalopram oxalate (품명 : 렉사프로정 등),</p> <p>Escitalopram (품명 : 렉사프로멜 츠구강붕해정)</p>	<p>1.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합을 원칙으로 함.</p> <p>2.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</p> <p>나.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</p> <p>1)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.</p> <p>2)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.</p> <p>3)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.</p> <p>4) 신경계 질환(뇌진증, 뇌졸중, 치매, 파킨슨병)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.</p> <p>다. 현행과 같음</p> <p>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(경고, 이상반응, 일반적주의 항목 등)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.</p> <p>3. 허가사항 범위(효능·효과 등)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Fluoxetine HCl제제(품명: 푸로작캡셀 등)를 기면증의 탈력발작(Cataplexy)에 투여한 경우에는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.</p> <p>※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</p> <p>○ 3가지 전형적 증상(우울한 기분, 흥미나 관심 소실, 피곤감 / 활동저하)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(집중력/주의력 저하, 자신감 저하, 죄책감, 비관/ 염세적 사고, 자살사고, 수면장애, 식욕감퇴)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.</p>